

1. 제안이유

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421호, 2020.6.9. 공포, 2020.12.10. 시행)됨에 따라 차마 진입 금지 숲길로 지정할 경우 고시할 사항과 진입 허가신청 및 허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(안 제21조의3)

-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,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,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,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(안 제21조의4)

-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,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과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사항 고시) 법 제25조의3제3

항에서 “해당 숲길의 위치·구간·거리·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
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숲길의 명칭
2.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
3.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
4. 대체 숲길 이용 안내
5.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의4(숲길에 차마의 진입 허가신청 등)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

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
별지 제11호서식의 숲길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 계획서를
첨부하여 숲길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숲길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 차마 진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
우 숲길 이용자의 안전 및 숲길의 훼손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
되는 등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숲

길 차마 진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숲길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신청내용	숲길명칭			
	숲길위치			
	구간/거리			
	차마의 종류			
	차마의 대수	대		
	진입인원	명(동승자 포함)		
	진입기간			
진입이유				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숲길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안전관리 계획서 1부.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(신청인)	→	접수 (숲길관리청)	→	검토·확인 (숲길관리청)	→	결정 (숲길관리청)	→	허가증 교부 (숲길관리청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제 0000-00 호

숲길 차마 진입 허가증

1. 성 명:
2. 생년월일:
3. 주 소:
4. 숲길명칭:
5. 숲길의 구간 및 거리:
6. 차마의 종류:
7. 차마의 대수:
8. 허가기간:
9. 허가조건: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의 진입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숲길관리청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3(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사항 고시)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“해당 숲길의 위치·구간·거리·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숲길의 명칭</u> <u>2.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</u> <u>3.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</u> <u>4. 대체 숲길 이용 안내</u> <u>5.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4(숲길에 차마의 진입 허가신청 등)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숲길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② 숲길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 차마 진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숲길 이용자의 안전 및 숲길의 훼손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등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숲길 차마 진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876